

수요자 중심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천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 및 제도가 강화되어 왔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처벌만 강화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사회적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규제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용한 수단일지라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형식적인 준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사업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에 대한 이행력을 높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새 정부는 보건 측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근로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작업환경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만성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각 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이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나, 사회 이슈화가 쉬운 사고성 재해만 부각되고 더 나아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보건 분야는 관심이 덜 하고 그만큼 정부, 기업의 투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무작정 보건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건관리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유해 요인 파악·평가 및 사후 조치까지 연결되도록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비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우수사례도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의 인식도 미비한 상황이지만 보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을 선임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이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나, 사회 이슈화가 쉬운 사고성 재해만 부각되고 더 나아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보건 분야는 관심이 덜 하고 그만큼 정부, 기업의 투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널리 보기

: 새 정부에게 바란다



여건이 부족하고,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 수준에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여 충분히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한 보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사업장의 자체 보건관리 역량 강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위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위탁기관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수료와 연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영세기업에는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단의 사업은 물량 위주 집행과 일회성 지원에 그쳐, 사업장의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한
보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작동성 중심의 사업장 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현행 산안법상 규정된 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효과성 검증이나 법·제도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경우 정부에 측정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보고된 측정 결과는 예방보다 사업장 감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 제출된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가 실제 재해예방 정책에 활용되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도는 2003년 도입 후 효과성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안전공단은



사업장 보건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직업성질환 예방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 전반에 구축되고 안착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근로자 건강보호체계’가 마련되어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